



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제도



선박저속운항 (VSR)

예산 : 5억원

구분	주요 내용
대 상	2023년 인천항 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하여 정상운항한 선사 • 대상선박 : 4개의 대상 선종 중 3,000톤 이상 외항선 • 권고속도 : 12노트('컨'선·자동차운반선), 10노트(LNG운반선·세미'컨'선)
산 식	선종별 선박입출항료 감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지급 • 감면율 : 30%(‘컨’선·자동차운반선), 15%(LNG운반선·세미‘컨’선) • 계절관리제 기간(1월~3월, 12월) 중 참여 선박에 대해 10%p 추가 감면
비 고	Port-MIS를 통한 저속운항선박 지원신청서 제출, 해양수산부의 AIS(선박위치정보)를 통한 검증 인센티브 지급액이 예산 초과 시 예산 한도 내에서 감면율 비율 대로 재조정 이미 항비를 감면받고 있는 선박의 경우 기존 감면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납부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제외 : ① 연간 총입항 횟수 중 60% 미만으로 저속운항 참여한 선박 ②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%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③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④ 장안도선점에서 도선사가 탑승한 선박



기타 감면 제도

즉시 감면

구분	대 상	감면율
원양항로	원양항로(북미주, 중남미, 남미, 유럽, 대양주, 아프리카) 노선을 운항하여 인천항에 입항한 풀컨선	선박입출항료·접안료 50% (항료표지료 제외)
국제카페리	인천항에 입출항한 국제카페리 여객선	선박입출항료·접안료·정박료 20~40%
환적	내항선-내항선 간 및 외항선-외항선 간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해 환적 후 출항한 화물 외항 '컨' 환적 화물	화물출항료 100% 화물입항료 100%
연안	인천항에 취항한 연안 '컨' 전용선 연안 '컨' 전용선이 운송한 수출입 '컨' 화물	접안료·정박료 100% 화물입출항료 100%
우수 선화주	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받은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하는 '컨' 전용 외항선	선박입출항료·접안료·정박료 1등급 50%, 2등급 30%
우수 선박관리사업자	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받은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	선박입출항료·접안료·정박료 30%
통합법인	2개 이상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통합 후 신설된 법인이 운송하는 '컨' 전용 외항선(3년 限)	선박입출항료·접안료·정박료 50%
AMP	AMP(육상전원공급장치)를 이용한 외항선	선박입출항료·접안료·정박료 15%

2023년도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 안내사항

물동량 인센티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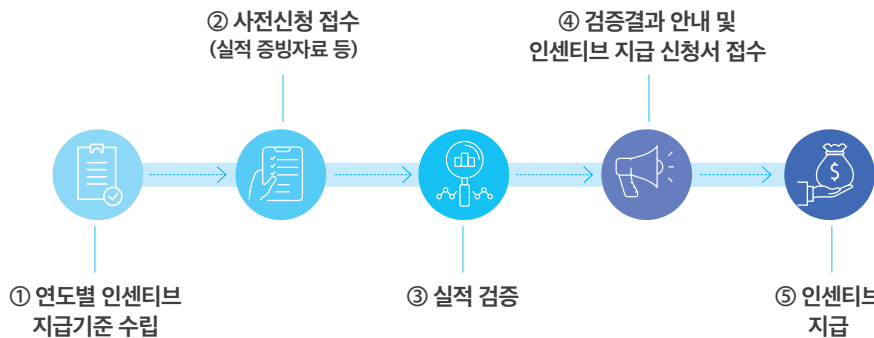
접수 일정

- ◆ 제1차 물동량 인센티브 접수 : 2024년 상반기 예정 (선사-기준②~③, 화주·포워더-기준①~④)
- ◆ 제2차 물동량 인센티브 접수 : 2024년 4분기 예정 (선사-기준①)

* 단, 인천시 포워더 인센티브(화주·포워더-기준⑤)는 2023년 4분기 접수·지급 예정

물동량 인센티브

지급 프로세스



공통사항

추후 확정되는
인천항만공사 및 인천광역시
예산 편성 규모에 따라 금액 등
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
세부사항은
‘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’를
참고해주세요. ▼



- ◆ 실적 적용 대상 기간 : 2023.01.01. ~ 2023.12.31.

- ◆ 예산 및 산정·지급 관련 사항

- 각 업체의 인센티브 수령액은 기준별(항목별) 배정 예산 중 4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인센티브 지급액은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함
- 국외 소재 업체의 경우, 한국 지사 또는 국내 대리점으로 지급 가능하며 해외송금은 불가함
- 단가제 인센티브 기준의 경우, 배정 예산이 초과할 시 단가를 감액하여 지급함
- 증가형 인센티브의 경우, 전년도 실적이 없는 업체는 당해 실적 모두 증가 물동량으로 적용 가능함
-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일 지급대상 내 활용할 수 있으며(선사 잔액 → 선사 활용, 화주·포워더 잔액 → 화주·포워더 활용), 아래의 지급대상별 우선순위로 잔액을 활용함 (단, 신규·전락 항로 잔액 미활용)
 - 선사 : ① 수출입 물동량 증가형 → ② 환적 → ③ 신규·전락 항로 인센티브 순 단가(한도) 보장
 - 화주·포워더 : ① 냉동·냉장 → ② 전락지역 인센티브 순 단가 보장 후, ③ 수출 물동량 증가형 내 실적비례

- ◆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,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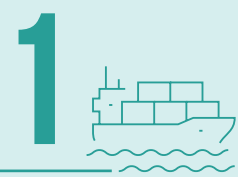
-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 업체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·지급 받거나 불법적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
- 각 지급기준에서 100만원 미만 수령 업체

- ◆ 지급기준의 문구·용어 해석, 기타 제도운영 관련 이견이 있는 경우 인천항만공사의 해석에 따름

2023년도 인천항

물동량 인센티브 및 사용료 감면 제도





선사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

PORT-MIS 선사코드별 신고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 발생 시 IPA 검증 물량 적용



신규·전략 항로

예산 : 11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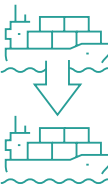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
대 상	2023년 인천항을 기항하는 '컨' 신규항로 개설 및 참여 선사 또는 전략항로 유지 및 참여 선사 • 1년 유지 필수, 주 1회 서비스 기준 개설 후 1년간 35항차 이상 기항 및 15만 TEU 이상 처리 필수										
산 식	(실적비례제)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 내 참여 선사의 물동량 실적 기준으로 분할 지급 •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										
	<table><tr><th>지역</th><th>전략지역 (미주·유럽)</th><th>서남아·중동·아프리카·대양주</th><th>동남아·극동러시아</th><th>중국·일본 등 기타 지역</th></tr><tr><td>한도</td><td>신규 4억원 유지 3억원</td><td>신규항로 3억원</td><td>신규항로 2억원</td><td>신규항로 1억원</td></tr></table>	지역	전략지역 (미주·유럽)	서남아·중동·아프리카·대양주	동남아·극동러시아	중국·일본 등 기타 지역	한도	신규 4억원 유지 3억원	신규항로 3억원	신규항로 2억원	신규항로 1억원
	지역	전략지역 (미주·유럽)	서남아·중동·아프리카·대양주	동남아·극동러시아	중국·일본 등 기타 지역						
한도	신규 4억원 유지 3억원	신규항로 3억원	신규항로 2억원	신규항로 1억원							
비 고	예산 초과 시 전략지역(미주·유럽) 신규 및 유지항로에 우선 지급하며, 이외 지역은 잔액 범위 내에서 기존 한도 비율(3:2:1)대로 재조정 신규항로는 해당 선사가 인천항에서 제공하지 않던 항로에 한정하고, 조정의 경우 기존 국외 기항지 중 50% 이상 변경 시에만 신규항로로 간주하며, 기타 신규항로 인정이 어려운 경우 「인센티브 지급 심의위원회」 논의 결과에 따라 인천항만공사가 결정 주 0.5회 서비스는 개설 후 1년간 18항차 이상 기항 시 항로별 인센티브 한도의 50% 지급										



수출입 물동량

예산 : 5.5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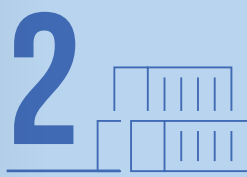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
	항목① - 규모형	항목② - 증가형												
대 상	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물동량 규모 1~5위 선사(연간 10만 TEU 이상 처리 필수)	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물동량이 전년 대비 2% 이상 증가한 선사(연간 2만 TEU 이상 처리 필수)												
산 식	단가제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1위</th><th>2위</th><th>3위</th><th>4위</th><th>5위</th></tr><tr><td>단가 (천만원)</td><td>5</td><td>4</td><td>3</td><td>2</td><td>1</td></tr></table>	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단가 (천만원)	5	4	3	2	1	(단가제)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X TEU당 1,000원
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								
단가 (천만원)	5	4	3	2	1									
비 고	적/공/수출/수입/환적 '컨' 물동량을 실적에 반영 항목①,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, 중복 수령 불가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선사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선사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													
예 산	1.5억원	4억원												



환적

예산 : 1.5억원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2023년 인천항 '컨' 환적(적/공) 물동량 1,000TEU 이상 처리 선사
산 식	(단가제) 환적 물동량 X TEU당 3,000원



화주·포워더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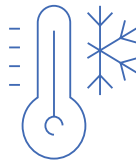
업체에서 제출한 B/L 및 수출입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검증하며, 오차 발생 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검증 물량 적용



전략지역 (미주·유럽)

예산 : 1억원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2023년 인천항의 전략지역(미주·유럽) 직항항로를 이용하여 '적'컨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또는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
산 식	(단가제) 수출 물량 X TEU당 40,000원, 수입 물량 X TEU당 20,000원
비 고	예산 초과 시 수출 물량에 대해 우선 지급 중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, 동일 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함 (단, MASTER DIRECT BL의 경우,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


냉동·냉장

예산 : 2억원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2023년 인천항을 통해 미주·유럽 지역으로 냉동·냉장(REEFER) '적'컨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 또는 수입한 수하인(CONSIGNEE) 그 외 지역으로 냉동·냉장(REEFER) '적'컨을 연간 20TEU 이상 수출한 송하인(SHIPPER)
산 식	(단가제) 대상 물량 X TEU당 50,000원
비 고	예산 초과 시 미주·유럽 지역 우선 지급 중빙은 MASTER 및 HOUSE B/L을 기준으로 하고, 수출은 SHIPPER, 수입은 CONSIGNEE가 지급대상이며, 동일 건으로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실화주에게 지급함 (단, MASTER DIRECT BL의 경우, LC 건의 경우에만 NOTIFY PARTY도 인정할 수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판단에 따름)



수출 물동량

예산 : 2.2억원
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
	항목① - 규모형	항목② - 증가형										
대 상	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 규모 1~5위 포워더 (연간 1만 톤 이상 처리 필수)	2023년 인천항 처리 '컨' 수출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이 전년 대비 3% 이상 증가한 포워더										
산 식	단가제	(실적비례제) 예산 × 전년 대비 증가 물동량 ÷ 대상 업체 증가 물동량 합계										
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1위</th><th>2위</th><th>3위</th><th>4위</th><th>5위</th></tr><tr><td>단가 (천만원)</td><td>3</td><td>2.5</td><td>2</td><td>1.5</td><td>1</td></tr></table>		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단가 (천만원)	3	2.5	2
구분	1위	2위	3위	4위	5위							
단가 (천만원)	3	2.5	2	1.5	1							
비 고	House B/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(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)의 실적을 산정											
	항목①, ②에 모두 해당할 시 둘 중 수령액이 더 큰 항목에서 지급하며, 중복 수령 불가 규모형 인센티브 대상 포워더가 증가형 인센티브 수령 시 차순위 포워더에게 규모형 인센티브 지급											
예 산	1억원	1.2억원										



복합운송 (Sea&Air, Air&Sea)

예산 : 0.5억원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2023년 인천항을 통해 Sea&Air 또는 Air&Sea 복합운송실적 보유 포워더
산 식	(실적비례제) 예산 × 업체별 물동량 ÷ 대상 업체 물동량 합계
비 고	수출과 수입 모두 동일한 B/L을 기반으로 신고 운송주선업부호 및 화물이 같은 경우만 인정 동일 화물이지만 수출과 수입 물량이 다를 경우, 더 작은 물량을 실적으로 인정



인천시 포워더

예산 : 1.3억원

구 분	주요 내용
대 상	인천광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포워더 중 2023년 1~3분기 중 인천항 처리 '적'컨 수출입 화물의 총 중량톤(G.W.T)이 200톤 이상인 업체
산 식	(균등배분제) 예산 ÷ 대상 업체 수
비 고	House B/L을 기준으로 수출입신고 포워더 코드(통관고유부호 알파벳 4자리)의 실적을 산정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47조 및 시행규칙 10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지급대상 제외

